

■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협약에 규정된

간호원의 권리와 의무

〈2〉

대한적십자사 제공 ■



◇一目 次一◇ 66號에서

- 제네바 제1협약
- 제네바 제2협약
- 제네바 제3협약
- 제네바 제4협약

피보호자
점령지역

제네바 제1협약

총 칙

〈특별협정〉 체약국은 일부조문(주8)에서 명문으로 규정된 협정외에 그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특별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어떠한 특별협정도 본협약에서 정하는 부상자, 병자,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의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본협약이 그들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I, 6조 1항)

(주8) 제 10, 15, 23, 28, 31, 36, 37 및 52조.

〈불가양도의 권리〉 부상자, 병자,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협약 및 전조에서 말한 특별협정(그러한 협정이 존재할 경우)에 의하여 그들에게 보장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없다.

부상자 및 병자

〈보호〉 다음의 조항에서 말하는 군대의 구성원과 기타의 자로서 부상자 또는 병자인 자는 모든 경우에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간호〉 그들은 그들을 그 권력속에 두고 있을 충돌 당사국에 의하여 성별, 인종, 국적, 종교, 정전 또는 기타의 유사한 기준에 근거를 둔 차별없이 인도적으로 매우 또한 간호되어야 한다. 그들의 생명에 대한 위협 또는 그들의 신체에 대한 폭행은 엄중히 금지된다. 특히 그들은 살해되고 불살되거나 고문 또는 생물학적 실험을 받도록 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들은 고의로 치료나 간호를 제공받음이 없이 방치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전염이나 감염에 그들을 노출하는 상태로 조성되어서는 아니된다.

다.

치료의 순서에 있어서의 우선권은 긴급한 의료상의 이유로서만 허용된다.

부녀자는 여성이 당연히 받아야 할 모든 고려로써 대우되어야 한다.

〈적군에의 부상자 유기〉 충돌당사국은 부상자 또는 병자를 부득이하게 적측에 유기할 경우에는 군사상의 고려가 허용하는 한 그들의 잔호를 돋기 위한 의무요원과 자제의 일부를 그들과 함께 잔유시켜야 한다. (I, 12)

• 의무부대 및 의무시설 •

충돌당사국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의무기판의 고정시설이나 이동의무부대를 공격하여서는 아니되어 항상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이들이 적국의 수중에 들어갈 경우 우 억류국은 이러한 시설 및 부대내에 있는 부상자 및 병자에 대하여 필요한 잔호를 스스로 보장하지 못하는 한 이들시설 및 부대의 요원은 자유로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있는 당국은 가능한 한 전기의 의무시설 및 의무부대를 군사목표에 대한 공격에 위하여 그 안전이 위태로워 치지 않도록 배치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I, 19)

• 의무요원 •

〈상근요원의 보호〉 부상자 또는 병자의 수색, 수용, 수송이나 치료 또는 질병의 예방에만 전적으로 종사하는 요원, 의무부대 및 시설의 관리에만 전적으로 종사하는 직원 및 군대에 수반하는 종교요원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I, 24)

〈구호단체의 요원〉 국내 적십자사의 직원 및 본국정부가 정당히 인정한 독자 구호단체의 직원으로서 제24조에 열거한 요원과 동일한 임무에 임하는 자는 동조에 열거한 요원과 동일한 지위에 놓인다. 단 이들 단체의 직원은 군관계 별령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I, 26)

〈피억류 요원〉 제24조 및 제26조에 규정된 요

월으로서 적국의 수중에 들어간자는 포로의 건강상태, 종교상의 요구 및 포로의 수에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어서 억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I, 28조 1항) (III, 33조 참조)

• 전물 및 자재 •

〈전물 및 저장품〉 적의 권리하에 들어간 군대의 이동위생부대의 자재는 부상자 및 병자의 잔호를 위하여 보류된다.

군대의 고정시설의 전물, 자재 및 저장품은 계속 전쟁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단, 그들 전물, 자재 및 저장품은 부상자 및 병자의 잔호를 위하여 필요한 한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전장에 있는 군대의 지휘관은 긴급한 군사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전기의 시설내에서 잔호를 받는 부상자 및 병자의 복지를 위하여 미리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들 전물, 자재 및 저장품을 사용할 수가 있다.

본조에 말하는 자재 및 저장품은 고의로 파괴하여서는 아니된다. (I, 33)

• 위생상의 수송수단 •

〈보호〉 부상자 및 병자 또는 위생제료의 수송수단은 이동 위생부대의 경우와 같이 존중 보호하여야 한다.

그들 수송수단 또는 차량이 적대당사국의 권리하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들을 포함한 충돌당사국이 그속에 있는 부상자 및 병자의 잔호를 모든 경우에 있어서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전쟁법규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정발에 의하여 얻은 민간요원 및 모든 수상수단은 국제법의 일반 원칙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I, 35)

〈위생 항공기〉 교전국은 위생항공기 즉 부상자 및 병자의 수송 및 위생요원 및 재료의 수송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가 관계 교전국간에 특별히 합의된 고도, 사각 및 항로에 따라서 비행하고 있는 중에는 공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I, 36조 1항)

제네바 제2협약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

〈보호 및 간호〉 다음의 조항에서 말하는 군대의 구성원과 기타의 자로서 해상에 있고 또한 부상자, 병자 또는 조난자인 자는 모든 경우에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단, “조난”이라 함은 원인 또한 항공기에 의한 또는 항공기로부터의 해상에의 물시착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II, 12조 1항)

• 병원선 •

〈군용 병원선의 통보 및 보호〉 군용 병원선, 특히 또한 전적으로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를 원조하여 또한 그들을 치료하고 수송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하여 전조되거나 설비된 선박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격이나 포획을 당하지 아니하며 그들선박이 사용되기 10일전에 그 선명과 행태가 충돌당사국에 통고됨을 조건으로, 언제든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동 통고에 나타나야 할 특징으로서는 등록된 총トン수, 선수로부터 선미까지의 길이 및 마스트와 연통의 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II, 22)

• 의무요원 •

〈병원선요원의 보호〉 병원선의 종교요원, 의무요원 및 병원요원과 그 송조원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그들은 선내에 부상자와 병자와 유무를 불문하고 병원선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안에는 포획되지 못한다. (II, 36)

제네바 제3협약

〈포로의 인도적 대우〉 포로는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되어야 한다. 그 역류하에 있는 포로를 사망케 하거나 그 전장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여하한 역류국의 불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도 금지되어야 하며, 또한 본협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특히, 포로에 대하여 신

체의 결단 또는 의료, 칫과 또는 임상치료상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없고 또한 그 이익에 배치되는 모든 종류의 의료 또는 과학적 실험을 행하지 못한다.

또한 포로는 특히 폭행, 협박, 모욕 및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

포로에 관한 보복조치는 이를 금지한다.

(III, 13)

〈포로의 부양〉 포로를 억류하는 국가는 무상으로 포로에 대한 급양을 제공하고 또한 그들의 전장상태상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III, 15)

포로를 원조하기 위하여 억류된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

〈피억류요원의 권리 및 특전〉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은 억류국이 포로를 원조하기 위하여 억류하는 동안 포로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단, 그들은 적어도 본 협약의 혜택 및 보호를 받으며 또한 포로에 대하여 의료상의 간호 및 종교상의 봉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권리의 제공받아야 한다.

〈의료임무의 수행〉 그들은, 억류국의 군법의 범위내에서 억류국의 권한 있는 기관의 관리 하에 그들의 직업적 양식에 따라, 포로들, 특히 자기가 소속하는 군대에 예속하는 포로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의료 및 종교에 관한 임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의료 또는 종교상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다음의 권리의 향유한다.

(a) 그들은 수용소 밖에 있는 작업반 또는 병원에 있는 포로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함이 허가된다. 이를 위하여 억류국은 필요한 수송수단을 그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제공한다.

(b) 각수용소의 선임군의관은 억류되어 있는 의무요원의 활동에 관련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수용소의 군 당국에게 책임을 진다. 이를 위하여 충돌 당사국은, 전쟁의 개시와 함께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협약 제26조에 말한 단체의 의무요

원을 포함하는 전의 무요원의 상당한 계급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이 선임군의관 및 군종은 그들의 임무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수용소의 권한 있는 당국과 교섭할 권리 를 가진다. 그러한 당국은 이들 문제에 관한 통신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협의를 그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c) 그러한 요원은 그들이 역류되어 있는 수용소의 내부 규율에 따라야 하며, 그들의 의무상 또는 종교상의 임무에 관계가 있는 것 이외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강제 당하지 아니한다.

〈피억류요원의 구호〉 총돌당사국들은 전쟁 중에 억류된 요원의 가능한 교체에 관하여 합의하고 또한 따라야 할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전기의 규정은 조로에 관한 외무 또는 종교상의 분야에서 억류국에 부과되는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III, 33)

제네바 제4협약

• 전쟁의 특정 결과에 대한
주민의 일반적 보호 :

〈부상자 및 병자〉 부상자, 병자, 허약자 및 임산부는 특별한 보호 및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일반적 보호〉 군사적인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각 총돌당사국은 사망자 및 사상자를 수색하고, 조난자 및 기타 중대한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고 약탈 및 학대로 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여지는 조치에 협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IV, 16)

〈후송〉 총돌당사국은, 공격 또는 포위된 지역으로 부터의 부상자, 병자, 허약자, 노인, 아동 및 임산부의 철수 및 동지역으로 향하는 종교요원, 의무요원 및 의료기체의 통과를 위한 지역적 협정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IV, 17)

〈병원의 보호〉 부상자, 병자, 허약자 및 임산부를 간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간병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항상 총돌당사국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

호되어야 한다.

〈증명서〉 총돌당사국은 모든 민간병원에 대하여 그 병원이라는 것과 그 병원이 사용되는 건물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병원으로서의 보호를 박탈당할 만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시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표지〉 민간병원은 국가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협약 제38조에 규정된 표지에 의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총돌당사국은 군사장의 사정이 허가하는 한 적대 행위의 가능성 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의 육·공·해군에게 민간병원을 명백히 보일 수 있도록 명확한 표지를 부착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병원이 군사목표물에 접근해 있음으로써 노출될 위험에 비추어 그러한 병원은 가능한 한 그러한 목표물로부터 멀어져 위치할 것이 요망된다. (IV, 18)

〈병원직원의 보호〉 민간인 부상자 및 병자, 허약자 및 임산부의 수색, 철수, 수송 및 간호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여 민간병원의 운영 및 관리에 정규로 또는 전적으로 종사하는 자는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신분증〉 절령지역 및 군사작전 지역 내에서 상술한 자는, 소지자의 사진을 첨부하고 책임 있는 당국의 스템프를 찍을 수 있도록 날인하여 그들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명서 및 임무수행 중 좌완에 달아야 할 날인된 방수용 완장에 의하여 식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완장은 국가에 의하여 교부되어야 하고 아울러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협약 제38조에 정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민간병원의 운영 및 관리에 종사하는 기타의 직원도 그들이 고용되는 동안 본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리고 본조에서 규정된 조건 하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완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신분증명서에는 그들 직원이 종사하

는 임무를 기재하여야 한다.

〈직원명부〉 각 병원의 사무소는 항상 그들 직원의 최근의 병부를 자국 또는 점령군의 편한 있는 당국의 사용에 공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IV, 20)

〈육상 및 해상수송〉 민간인부상자 및 병자, 허약자 및 임산부를 수송하는 육상의 호송차량 대 또는 병원열차 또는 해상의 특수선박은 제18조에서 규정된 병원과 동일하게 존중 및 보호되어야 하며 아울러 국가의 동의를 얻어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의 제38조에서 규정한 특수효자를 계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IV, 21)

피보호자

(주·9)

〈억류또는 주거지정의 근거〉 피보호자의 억류 또는 주거지정은 억류국의 안전보장상 이를 절대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명할 수 있다. (VII, 42조 1항)

〈타국에로의 이송〉 피보호자들은 여하한 경우에라도 그들의 정치적 의견 또는 종교적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에 이송되어서는 아니된다. (VII, 45조 4항)

점령지역

〈추방, 이송, 후송등〉 피보호자들을 점령지역으로부터 점령국의 영역 또는 피점령 여부를 불문하고 타국의 영역으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창제이송 또는 추방하는 것은 그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금지된다. (VII, 49조 1항)

〈주민을 위한 식량및 의료품〉 점령국은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써 주민의 식량 및 의료품의 공급을 확보할 의무를 진다. 특히 점령국

(주·9) 1949년의 제네바 제4협약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외국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호를 부여한다. 즉 부상자, 병자, 불구자, 노인, 유행여성 및 15세 미만의 아동(이) 등 정은 적성(敵性)의 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은 점령지역의 자원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필요한 식량, 의료품 및 기타의 물품들을 수입하여야 한다.

점령국은 점령군 및 행정요원들의 사용에 충당할 경우와 그리고 민간인 주민들의 수요를 고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령지역내에 있는 식량, 물품 또는 의료품을 정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점령국은 다른 제국제조약에 대한 공정한 대가의 지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익보호국은 긴급한 군사상의 요구에 의하여 일시적 제한이 필요하게 될 경우를 제외하고 언제라도 점령지역에 있어서의 식량 및 의료품의 공급상태를 자유로히 조사할 수 있다. (VII, 55)

〈위생및 공중보건〉 점령국은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국가 및 현지 당국의 협력 하에 점령지역에 있어서의 의료상 및 병원의 시설과 용역, 그리고 공중보건 및 위생을 확보하고 또한 유지할 의무를 진다. 점령국은 특히 전염병 및 유행병의 단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적 조치를 채택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모든 부류의 의무요원들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허용된다. (VII, 56조 1항)

〈병원의 징발〉 점령국은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들을 간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환자들의 간호 및 치료와 민간인 주민들의 입원요구를 위하여 적당한 조치가 적당한 때에 취하여 질 것을 조건으로 하고 민간인 병원들을 일시적으로 정발 할 수 있다.

민간인 병원의 기재 및 저장품들은 그것들이 민간인 주민들의 수요에 필요하게 되는 한정 발할 수 없다. (VII, 57)

국내적 소요, 내란, 무장반란등

이러한 경우에 관하여는 4개 협약에 공통된 조항인 제3조가 적용된다. <계속>